

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1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5. 2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홍보환경 변화로 소셜미디어 홍보가 확대됨에 따라 중구소식지 발행 횟수를 줄이고 소셜미디어 홍보에 집중하고자, 중구소식지 발행 주기 조문을 정비
- 나. '22년부터 중구명예기자단과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통합운영에 따른 명예기자 관련 조문과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발행 방식에 맞지 않은 광고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식지 발행주기 변경: 매월→분기별(안 제3조제1항)
- 나. 명예기자 역할, 위촉, 활동경비 관련 조문 삭제(안 제6조, 별표 1)
- 다. 소식지 광고 게재, 광고료 관련 조문 삭제(안 제8조, 별표 2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14672호, 2024. 4. 1.)

라. 입법예고: 2025. 3. 31. ~ 4. 21.(21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매월”을 “분기별”로 한다.

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원고료 지급 기준표(제5조 관련)

(단위: 원)

구분	규격	지급액	비고
칼럼	편	30,000	
수필·콩트·시	편	20,000	
독자투고	건	10,000 (상품권)	
퀴즈당첨자	매	10,000 (상품권)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(생략)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
제2조(제호) (생략)	제2조(제호) (현행과 같음)
제3조(발행) ① 소식지는 <u>매월</u> 발행한다. 다만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.	제3조(발행) ① --- <u>분기별</u> ----- -. ----- ----- -----.
제4조(게재사항)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5.(생략)	제4조(게재사항) (현행과 같음) 1. ~5.(현행과 같음)
제5조(자료수집) ①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유관기관·단체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다. ②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원고료 지급 기준표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	제5조(자료수집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명예기자) ①구청장은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. ②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3.(생략)	<삭 제>
③명예기자는 책임감이 투철하	<삭 제>
	<삭 제>
	<삭 제>

고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④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배부)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,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광고) ①소식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

②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광고료를 납부해야 한다. 다만, 공익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.

③광고 게재방법, 징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제7조(배부)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소식지를 매월 발행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작성자

- 소 속: 홍보실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이 름: 김수정
- 연락처: (052)290-3273

【참고자료】

[별표 1]

【현 행】

원고료 지급 기준표

(단위: 원)

구분	규격	지급액	비고
<u>명예기자 원고료</u>	<u>건</u>	<u>30,000</u>	
칼럼	편	30,000	
수필·콩트·시	편	20,000	
독자투고	건	10,000 (상품권)	
퀴즈당첨자	매	10,000 (상품권)	

【개정안】

원고료 지급 기준표(제5조 관련)

(단위: 원)

구분	규격	지급액	비고
칼럼	편	30,000	
수필·콩트·시	편	20,000	
독자투고	건	10,000 (상품권)	
퀴즈당첨자	매	10,000 (상품권)	

[별표 2]

【현 행】

광고료 기준표

(단위: 원)

구분	흑백	칼라	비고
1면하단광고 (3단×20cm)	300,000	360,000	※ 면별 요금기준(흑백) ◦ 1면: 5천원/1단1cm ◦ 8면: 4천원/1단1cm ◦ 2-7면: 3천원/1단1cm ※ 칼라광고일 경우 ◦ 흑백요금의 20% 추가 ◦ 요금은 천원 미만절사
8면하단광고 (3단×20cm)	240,000	288,000	
2-7면하단광고 (3단×20cm)	180,000	216,000	

【개정안】

[삭 제]